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45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9월 10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국민권익위원회의 ‘17개 광역 시·도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’(25.5.26.) 사항을 반영해 의회의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 연임 제한 규정 미비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·민관유착에 따른 부패발생·진입장벽 형성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.
- 나. 그밖에,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조직 개편(25.7.4.)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(언론홍보실→언론홍보과, 법제담당관→법제과 등)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담당관 등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개정함(안 제2조).
- 나. 입법·법률고문 임기의 연임제한(연임 가능 횟수 3회 제한) 규정을 마련함(안 제6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본문 중 “하되, 재위촉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입법·법률고문은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으나, 연임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.

③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언론홍보실장, 각 담당관”을 “각 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및 제2항 중 “법제담당관”을 각각 “법제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임기) <u>입법 ·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재위축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.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6조(임기) ① ----- ----- <u>한다. <단서 삭제></u> ② <u>입법 · 법률고문은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축할 수 있으나, 연임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.</u> ③ <u>입법 · 법률고문의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.</u>
제7조(운영) ① <u>의회의 언론홍보실장, 각 담당관, 각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제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</u> ② <u>의원이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담당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.</u>	제7조(운영) ① ----- <u>각 과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제과장</u> ----- ----- ----- ② ----- ----- <u>법제과장</u> ----- -----.